



특허청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3. 2.(목) 07:30	배포 일시	2023. 3. 1.(수) 16:00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	책임자	과장 한덕원 (042-481-5182)
		담당자	사무관 장성국 (042-481-5999)

“위조상품에 강력 대응...한국 제품의 수출 피해 막는다”

- 특허청, 「케이(K)-상표(브랜드)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」 발표 -

- ◆ (사전예방) 위조상품 위험 상위 업종·국가 경보, 상표 무단선점 감시(모니터링) 및 맞춤형 법률 자문, 위변조 방지기술 보급 확산 등 사전예방 지원 강화
- ◆ (피해구제) 전 세계 100개국 이상, 1,604개 온라인 유통망(플랫폼) 위조상품 상시 점검...피해 빈발업종*에 피해조사-소송제기 등 집중지원 프로그램 신규 추진
* 식품, 패션, 화장품, 의료기기, 캐릭터, 제약바이오 등
- ◆ (대응기반) '케이(K)-상표(브랜드)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' 신규 구성·운영, 국내 온라인 유통망(플랫폼)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·제도 개선 추진

-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3월 2일(목)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(서울 종로구)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케이(K)-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」을 발표했다.
- 우리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(K)-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,

* 전 세계 위조상품 국제무역 피해국('17~'19, OECD) : (1위) 미국, (2위) 프랑스, (3위) 독일, (4위) 이탈리아, (5위) 덴마크, (6위) 스위스, (7위) 일본, (8위) 한국, (9위) 영국, (10위) 스페인

** 해외 케이(K)-상표(브랜드) 위조상품으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 피해('19년 기준) 추산('22, 지식재산연구원) : (기업 매출액 축소) 약 22조원, (일자리 손실) 31,753개, (세입 감소) 4,169억원

-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, 피해구제, 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.

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.

- ① 케이(K)-상표(브랜드)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 정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, 지재권 전문가*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.

* 지식재산보호원 내에 설치된 「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」의 변리사·변호사 15명 활용

- ②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제공하고,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(품목)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.
- ③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, 유통이력 추적, 위·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
②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.

- ① 민간의 위조상품 감시(모니터링)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위조상품 감시(모니터링)·차단을 중국·동남아에서 전 세계 온라인 유통망(플랫폼)*으로 확대 지원한다.

* (현행) 8개 국가 19개 전자상거래플랫폼 → (개선) 최대 114개 국가 1,604개 온라인플랫폼

- ②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맞춤형 대응전략 상담(컨설팅)(1년 이내)을 지속 지원하고,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·단체에 대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(2년 이상)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.
- ③ 국내에서도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위조상품 피해업종 및 피해기업을 특정하여 수사를 강화한다.
- 해외에서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과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.

- ③ 위조상품에 대한 **국내의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·제도를 개선한다.**
- ①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단체와 ‘**민관 공동대응 협의회**’를 구성하여 위조상품 대응 방법(노하우)를 공유하고,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.
 - ②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,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.
 - ③ 국내 온라인 유통망(플랫폼)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,
 - ④ 케이(K)-상표(브랜드)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근거도 강화할 계획이다.
- 이인실 특허청장은 “케이(K)-상표(브랜드)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.”라고 언급하면서,
- “이번 ‘케이(K)-상표(브랜드)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’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붙임: 「케이(K)-상표(브랜드)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」 주요내용

【 비 전 】

우리 혁신기업의 수출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

【 추진 전략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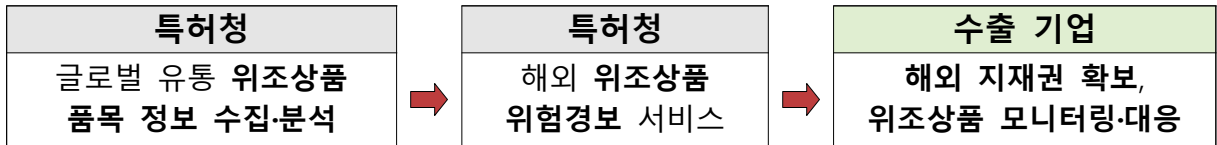
- ✓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 강화
- ✓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 지원 확대·고도화
- ✓ 위조상품 국내외 대응체계 확충 및 법·제도 개선

분 야	주요 추진과제
1 사전 예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해외 위조상품 위험경보 등 예방체계 구축 2 해외상표 무단선점 정보제공 및 권리화 확대 3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강화
2 피해 구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민간역량을 활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확대 2 해외 위조상품 빈발업종 집중지원 신규 추진 3 국내외 K-브랜드 위조상품 세관·특사경 단속지원 강화
3 대응 기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해외 K-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신규 운영 2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침해피해 지원체계 확충 3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법제화 4 국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·구제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

전략 1.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.

- ① 해외에서 유통되는 K-브랜드 위조상품 정보를 조사하여 분석하고, 이를 토대로 위조상품 위험이 높은 업종 및 국가 등에 대한 위조상품 위험정보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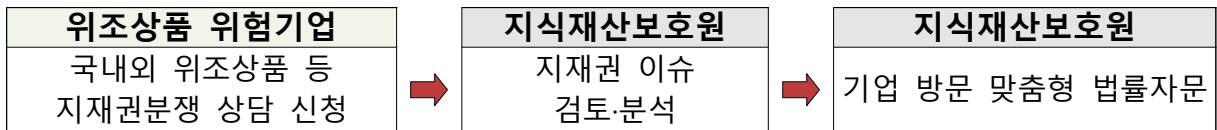
< 해외 위조상품 위험정보 서비스 개요 >



- K-브랜드 위조상품 위험이 높은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전문가*를 통해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한다.

* 지식재산보호원 내에 설치된 「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」의 변리사·변호사 15명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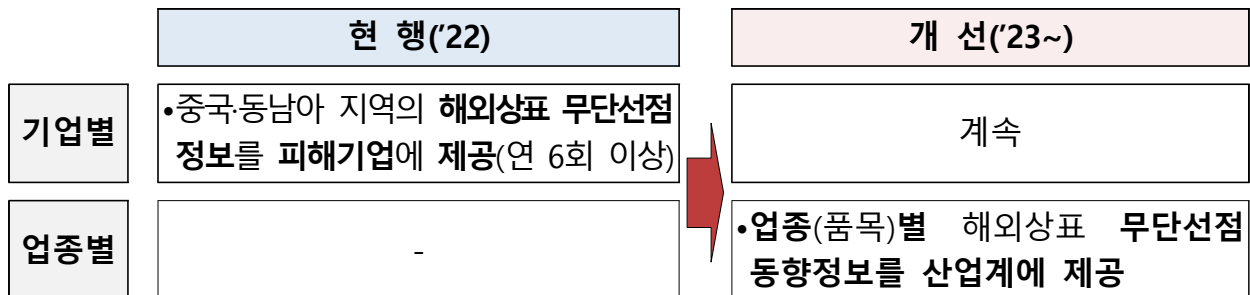
< K-브랜드 침해피해 맞춤형 지원 프로세스 >



- ②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하여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별 피해기업에게 제공하고,

- 금년부터는 산업계에 상표 무단선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(품목)에 대한 정보도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.

< 해외상표 무단선점 정보제공 개선방향(특허청) >



○ 또한, 콘텐츠·정보통신·농수산물 등 분야의 해외 수출기업 지원 사업에서 해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확대한다.

③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, 유통이력 추적, 위·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
<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례(한국조폐공사) >

다방향 잠상패턴	스마트기기 인식용 보안패턴	보안정보화 코드

○ 공공·민간의 위조상품 대응기술 정보도 수집하여 위조상품 대응 기술 안내서를 제작하고, 위조상품 빈발 업계에 확산할 예정이다.

전략 2.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.

① 민간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위조상품 모니터링·차단을 중국·동남아 지역에서 벗어나 전세계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.

<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·차단 개선방향 >

	현 행('22)	개 선('23~)
지원 방식	•지식재산보호원 내에 자체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운영	•지식재산보호원이 민간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 활용하여 기업에 서비스 제공
대상 지역	•8개 국가 (중국·동남아)	•최대 114개 국가 (중국·동남아 + 미국, 유럽, 중남미 등)
모니터링 범위	•19개 전자상거래플랫폼	•최대 1,604개 온라인플랫폼 (전자상거래플랫폼, 소셜미디어플랫폼 등)

②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해 개별기업 맞춤형 위조상품 대응전략 컨설팅(지원기간 1년 이내)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,

-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·단체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 (2년 이상 패키지 지원)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.

< 해외 K-브랜드 위조상품 대응전략 컨설팅 개선방향 >

지원대상	현 행('22)	개 선('23~)
개별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개별기업 지원(1년) •대응전략별로 신청·선정 	< 계속 >
협단체 (기업 공동)	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위조상품 빈발업종* 협단체 소속 기업들에 2년 이상 장기 지원 •위조상품 유통현황 조사, 증거수집, 행정단속·민형사소송 등 패키지 지원

* 식품, 패션, 화장품, 의료기기, 캐릭터, 제약바이오 등

③ 국내에서도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위조상품 피해업종 및 피해기업을 특정하여 수사를 강화하고,

- 해외에서 위조상품 단속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대한 국내기업 지재권 등록 지원과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·실시할 예정이다.

전략 3.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.

① 해외에서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별 협·단체 중심으로 '해외 K-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'를 구성('23.下)하고,

- 이를 통해 위조상품 피해기업 간에 해외 위조상품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, 개선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.

< 해외 K-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(안) >



②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(40개) 제도를 개편*하고,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을 제고**할 예정이다.

* 지재권 중점공관 제도 내실화를 위해 중점공관 제도개편 완료 예정('23년 상반기)

** 지재권 중점공관 부임자·담당관 지재권 교육 신설 추진

○ 또한, 해외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IP-DESK*,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** 간 업무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.

* IP-DESK(11개국 17개소) : 미국(2개), 중국(6개), 독일(1개), 일본(1개), 베트남(1개), 태국(1개), 인도(1개), 인도네시아(1개), 필리핀(1개), 러시아(1개), 멕시코(1개)

** 해외 저작권 보호기관 : 저작권 해외사무소(중국, 태국, 필리핀, 베트남 등 4개소),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(10개소)

③ 국내 온라인플랫폼의 위조상품 차단과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*을 추진할 예정**이다.

< 온라인플랫폼 책임강화 관련 상표법 개정안* 주요내용 >

구 분	세부 내용
판매중단 조치의무	•온라인플랫폼은 상표권자 등이 위조상품 발견·신고 시,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조치의무(기술·경제적으로 불가능 시 미적용) 발생
면책규정	•온라인플랫폼이 위조상품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고,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미성립
정보제공	•온라인플랫폼이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(성명, 주소)요청 거절 시,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정보제공 명령

※ 온라인플랫폼 책임강화 관련 상표법 개정안('20.7~9월 발의) 산자중기위 계류 중

○ 아울러, 정부가 국내외에서 K-브랜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근거* 강화할 계획이다.

* ('23) 「발명진흥법」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장(章) 신설 추진 →

(중장기) 국내외 K-브랜드 위조상품 대응강화를 위해 별도 법률 신설 검토